

붙임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방안

2026. 10.

구조개선정책과

I . 검토배경	1
II . 현행 금융회사 정리제도 현황 및 한계	2
1. 우리나라 금융회사 정리제도 현황	2
2. 현행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한계	3
III . 신속정리제도 도입 기본방향	4
IV . 신속정리제도 도입방안	5
V . 향후계획	8

[붙임1] 신속정리 절차 흐름도

[붙임2] 해외 주요국 정리제도 및 신속정리 사례

I. 검토배경

- '23년 美SVB 사태는 단시간 내 고강도의 뱅크런과 금융 불안의 급속한 확산*을 보여주며, 위기 전이의 신속한 차단 필요성을 부각

* 美SVB의 손실 확정 공시 이후 급격한 뱅크런(총예금 약 30%↓)에 따라 지역 내 불안 확산 우려

- 특히,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단순 유동성 위기를 넘어, 금융권 전반으로 빠르게 전이되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

- 주요국(미국·영국·EU)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각 국의 상황에 맞게 정리제도를 정비함

* '08년 미국 대형 IB의 단기부채 차환 실패가 자금시장으로 전이(리먼브라더스 '08.9월 파산)

- 시스템리스크 우려 등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청·파산 外 다양한 정리방식이 가능하며, 각종 절차를 면제하여 신속성을 보장

- 이에 따라, '23년 SVB 미국·영국*의 급격한 디지털 뱅크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여 단기간 내 금융시장을 안정화

* (美SVB) 4일만에 가교은행 설립·예금 전액 이전으로 채권시장 변동성 안정화
(英SVB) 주말 3일 이후 HSBC에 매각하여 핵심 기능의 중단 없이 신속히 정리

- 그간, 우리나라는 사전 위기대응체계 및 유동성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로는 위기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

* RRP 도입('20년), 예금보험한도 상향('25.9월), 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24년 발의) 등

** 적기시정조치→미이행 시 정리의 단계적 구조 및 각종 절차 준수 의무(정리에 약 150일 소요)

- 부실 확산 前 선제적 개입 및 각종 절차 면제*로 신속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정리제도 도입 필요

* ① 국가계약법상 입찰 절차(수의계약으로 간주) ②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③ 상법·금산법상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예: 주식매수청구권) 등 관련법상 절차 면제

➡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대응을 넘어 부실 확산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II. 현행법상 금융회사 정리제도 현황 및 한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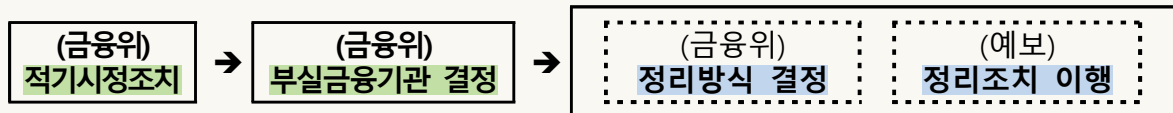
우리나라 금융회사 정리제도 현황

◆ 금산법 및 예보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 감독 및 관리하고(금융위, 금감원), 정리절차를 진행(금융위, 예보)

- 금산법 :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기시정조치, 정리 처분
- 예보법 : 정리 시 자금지원, 예보의 정리 알선 등

※ 일반기업 도산은 법원 주도로 정리되나(채무자회생법), 금융기관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금융당국을 통한 별도의 정리체계로 정리 실행(美 EU, 日 동일)

< 현행 부실금융기관 정리 절차 >



□ **(사전 감독)** 감독당국*이 평시에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영업 행위 등을 감독·규제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

* 금융위가 감독규정 제·개정 등 감독 관련 제반사항을 최종 결정·승인하며,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

□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평시 감독만으로 대응이 어려워질 경우, 금융위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적기시정조치*)를 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부과

* (금산법 제10조) 경영개선권고(BIS 8% 미만 등) → 경영개선요구(BIS 6% 미만 등) → 경영개선명령(BIS 2% 미만 등)

□ **(정리절차)** 적기시정조치(금융위)→ 부실금융기관 결정(금융위)→ 재산실사 및 정리방식별 비용검증(예보)→ 정리방식 결정(금융위)→ 자금지원 등 정리실행(예보)

-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 부과로도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리방식을 결정**

* 순자산 부족 또는 예금지급·차입금 상환 등이 어려울 시 금융위(또는 예보위)가 지정

** 최소비용 원칙(예보법 §38의4)에 따라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 방식을 적용해야 함
→ (예외) 청파산이 금융제도 안정성을 해칠 우려시(예보위 인정) 다른 정리방식 적용 가능

-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에 출자·출연 등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고, 정상화·계약이전·청파산 등 정리조치를 실행하고 사후 관리

◆ 금산법상 현행 정리제도는 자본잠식에 따른 점진적 부실에 대응하는 정리체제로, 위기 시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

* ① 적기시정조치 → 미이행 시 정리의 단계적 구조이며, ② 법상 절차 준수 의무로 인해 부실징후 포착부터 계약이전 결정까지 통상 150일 내외 소요

⇒ ③ 정리기간 장기화시 정리비용 상승 및 시장불안 확산 우려

① 부실 발생 시 적기시정조치* (§10) 이후 이를 미이행 또는 불가 시에만 정리처분 (§14②에 따른 강제정리)이 가능한 단계적 구조

* 적기시정조치를 위한 금감원의 순자산 부족 실사 등에 평균 45일 이상이 소요

○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부실 지정 시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처분이 가능하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만 가능 (§14②단서)

② 정리방식 결정 이후에도 상법상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 입찰절차, 사전통지 등을 모두 거치는 경우 수 주 이상이 소요

○ 금산법에는 상법상 절차에 대한 단축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수일 내 정리하기에는 부족하고,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정리 시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부실금융기관의 주총 면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주권제출 공고 기간·주총 통지기간 등 각종 기간 단축(금산법 제5조 3~5항, 7항, 제12조 4~6항)

③ 이에 따라, 금융회사 부실 포착시 금감원의 재무 현황 검사부터 계약이전 결정까지 약 150일이 소요되어 영업정지 기간 장기화

○ ①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정리비용이 상승하고 ② 예금인출 정지 장기화로 인해 시장불안이 확산될 우려

* 저축은행 사태시 30개사 부실 규모가 부실 결정 이후 약 1.2배(당시 약 27조원의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약 3.9조원) 증가

Ⅲ. 신속정리제도 도입 기본방향

◆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 ▶ 부실 확산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되,
- ▶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제약 및 절차적 권리 제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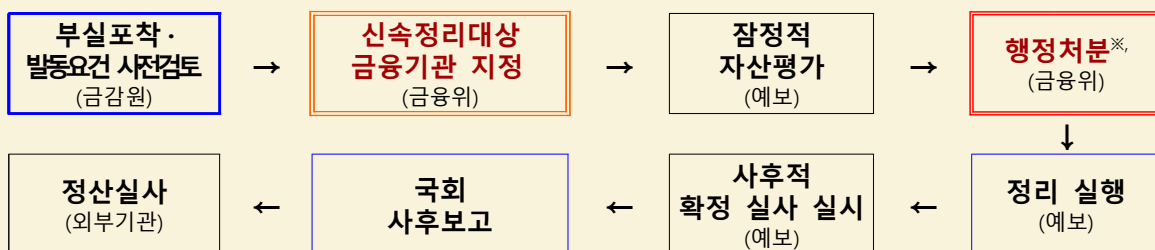
① 부실 확산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신속·선제적 대응

- ① 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예보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대상}
- ② 금융회사의 급격한 위기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 우려 시 발동^{요건}
- ③ 금산법상 다양한 정리조치 가능
- ④ 관련법상 각종 절차 면제 · 잠정 실사

② 권리 제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 ① 다른 조치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없어 공익상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서 발동^{요건}
- ② 금융위에서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절차}
- ③ 정산실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파산 대비 손해액을 사후적 손실보전(NCWOL)
- ④ 국회 소관 상임위 사후 보고

◆ 신속정리제도 절차(안)



※ 관리인 선임, 주식소각·병합,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계약이전, 제3자 인수 등 (사전통지 면제, 주총결의/주주·채권자보호절차/입찰절차 등 생략가능)

IV.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

1

적용 대상 기관

□ 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예보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 예보기금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예보법 미적용 금융기관*)은 활용 가능한 처분이 제한적이므로 신속정리 대상에서 제외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아닌 자산운용사·신탁자문·여전사·재보험: 예적금 등 수신기능이 없거나 투자자 자금이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되어 뱅크런 가능성이 낮음 → 예금자보호 및 예보 자금지원 대상이 아님

※ 개별법에 따른 정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수협은행 및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산림조합)은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예정

2

시스템리스크 우려 등 예외적 상황에서 발동

□ (요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① 부실 및 부실우려 금융기관

- 부실 금융기관 : 자본잠식, 지급불능, 유동성 위기 상황의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에서 결정 (§2.2)
- 부실우려 금융기관 :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금융위에서 결정

※ 금융기관의 부실은 유동성위기 → 지급불능 → 자본잠식 順으로 진행되며, 신속정리는 주로 유동성위기시 적용될 가능성

② 금융위기 초래¹⁾ 또는 금융시장 안정의 현저한 저해 우려²⁾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 1) 외환위기('97년), 글로벌 금융위기('08년) 수준의 금융·실물경제 복합위기
 - 2) 해당 금융회사의 부실(우려)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구체화
- 다수의 금융회사로 동시다발적으로 부실이 전이되어 금융중개·지급결제 등 핵심기능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등
(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1~'13년 저축은행 사태, '23.3월 SVB 미국)

③ 금산법상 다른 처분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보충성”)

- 적기시정조치 권고·요구·명령(§10), 정리처분(§14) 등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긴급한 필요성은 위기 전이 속도, 시장신뢰 훼손 정도, 정리 지연 시 추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발동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는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사전 검토 시 예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예정

□ **(절차)** 금융위원회 의결(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통해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

⇒ 금융위 참여 기관*간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3

금산법상 다양한 정리조치 가능

□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10①) 및 정리처분(§14①,②)에 상응하는 모든 정리조치 중 영업양도·합병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

* 인수금융기관의 주주총회 생략 시 위헌소지가 존재하며, 사후 소송 위험이 높고 (CS-UBS 합병 사례), 신속정리 국면에서 동 정리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낮음

[현 금산법상 처분 및 신속정리로 가능한 정리조치]

적기시정조치(§10①)	정리처분(§14①,②)	신속정리
임원 직무정지·관리인 선임	임원 직무정지·관리인 선임	임원 직무정지·관리인 선임
영업 정지	영업정지	영업 정지
영업양도·합병		
계약이전	계약이전	계약 이전
제3자 인수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감자)		주식 소각·병합(감자)
	인·허가 취소	인·허가 취소

□ 이에 따라, 위기 상황, 인수자 존재 여부,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정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

◇ 정리의 주 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절차를 면제하고 재산 실사를 단축하여 단기간 내 정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 **(국가계약법)** 정리처분에 따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간주하여 입찰 공고, 심사자료 제출 기간 부여 등 입찰절차를 면제
 - * 예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 준수 필요
 - **(잠정실사)** 예보가 정리대상 금융기관의 자산·부채를 1~2일 내 신속하게 평가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후 확정 실사를 실시
 - * ① HSBC는 3.12.(일) 5시간동안 SVB UK의 데이터룸에 접속하여 70% 실사 후 인수를 결정, ② UBS도 FINMA의 손실보전 보증 조건 하에 잠정 평가만을 거쳐 인수를 결정
 - **(행정절차법)**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정리 처분 前 사전통지(10일),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면제
 - **(상법·금산법)**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면제
 -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9②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기업결합심사(최대 90일) 면제 및 사전 협의로 대체
 - *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일시정지 도입) 신속정리 시 적격금융거래(채무자회생법상 파생거래·환매조건부 거래 등)의 조기종결·정산을 최대 **2영업일** 정지하여 잠정평가의 불확실성을 보완

[관련법상 절차 단축 특례]

절 차		현 행	특례 적용 후
국가계약법	입찰 공고	10일 이상 공고	면제
	입찰자 심사자료 제출	5일 이상	※ 수의계약으로 간주
예보법	잠정평가(간이실사)	최소비용 판단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	잠정평가→사후 확정 실사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10일 전 통지	면제
	의견청취·의견제출	청문 또는 공청회 등	면제
상법·금산법	이사회·주총 결의	인수 대상 부실금융기관에 요구	면제
	주식매수 청구권	주총결의 후 10~20일 내 청구 가능	면제
	채권자 이의제출	10일 이상 기간 부여	면제
	주권 제출 공고	5일~1개월 이상 공고	기간 단축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심사	90일 이내 경쟁제한성 심사	면제 ※ 공정위 사전 협의*

* 경쟁제한 가능성, 효율성 증대 효과, 자체 회생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 협의 절차 마련

5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사후적 보전

- **(원칙)** 신속정리로 인한 채권자·주주의 손실이 청산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부담하였을 손실보다 크지 않도록 보전
 - * NCWOL: **N**o **C**reditors **W**orse **O**ff than in **L**iquidation
 - 영국 SRR, EU BRRD가 채택한 글로벌 표준 원칙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의무를 충족하면서 신속정리의 정당성을 확보
- **(절차)** 정리 종료 후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 등)의 정산실사(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착수)를 통해 청산기준 손실을 산정 → 신속정리에 따른 실제 손실과 비교 →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
 - **(독립성·전문성)** 정산실사 수행기관은 정리당국 및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 및 실사 전문성을 갖춘 곳으로 금융위가 선정
 - **(자금지원 근거 마련)** 신속정리에 따른 NCWOL 보전 시 자금 지원을 위한 예보기금 사용근거 신설 (예보법)

6

국회 사후보고

- 금융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의 내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에 보고
 - * 정리비용, 후속 매각 진행 상황 등을 포함

V. 향후계획

1. 금산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 '26. 4분기 ~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규제합리화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 금융위·차관·국무회의 → 국회 제출 등 입법 절차 추진
 - *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공정위, 농림부, 해수부 등
- ※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위해 정부입법으로 추진

2. 하위규정 마련 등 제도시행 준비 :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 발동 요건(예: 시스템리스크 판단기준 구체화) 등 하위규정 마련, 유관기관 별 신속정리 실행계획 검토 등

현행 금융회사 정리 절차	누적 소요기간		신속정리 절차	누적 소요기간
부실징후 포착			부실징후 포착	
금감원 검사 시작	D-day			
자문사 선정 입찰공고 (사전공고 3일, 본공고 10일)	D+11			
금감원 검사 종료 (순자산 부족 확인)	D+24			D-day
자문사 선정 완료				
사전통지 (부실금융기관 결정, 경영개선명령 부과)	D+26		금융당국 신속정리 발동 협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	부실금융기관 결정	
경영개선명령 부과	D+36			
재산실사 착수			재산 잠정평가 실시	D+1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D+66			
매각 입찰공고(10일)				
매각 입찰공고 종료	D+76		잠정인수자 수요조사	
예비인수자 선정 및 실사(3주)			예비인수자 선정 및 실사	
본입찰	D+83~128		잠정평가 완료	D+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의(3주)			최종인수제안서 접수	
사전통지(계약이전, 인가취소)	D+134		계약조건 협상 및 합의	
자금지원안 의결(예보위)			자금지원안 의결(예보위)	D+3
계약이전 의결(금융위)	D+144		계약이전 의결(금융위)	

※ 신속정리 시 생략되는 절차

- : 금감원 검사 및 적기시정조치 (금산법)
- : 경쟁입찰 절차 (국가계약법)
- :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1

해외 주요국 정리제도 현황

◇ 美·英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우려)금융회사에 대한 신속정리 제도를 도입·정비하여 정리제도를 이원화

- ① (일반정리)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최소비용 고려}(美), 청·파산(英·EU)
- ② (신속정리) 시스템리스크 등이 우려되어 공익상 필요한 경우
→ 다양한 정리방식, 절차 면제, 이해관계자 손실 사후적 보전

[해외 주요국 정리제도 비교]

	일반정리	신속정리
미국	▶ (요건) 자본충실도 위험수준 및 비계량 요건 등(12개) ▶ (방식) 제3자/가교 P&A, 보험금 지급 및 청·파산 중 최소비용	▶ (요건) 일반정리 요건 충족 + <u>시스템리스크 결정</u> ▶ (방식) 제3자/가교 P&A, 보험금 지급 및 청·파산 등 ▶ (절차 면제) 입찰 절차 생략, 실사 생략, 자산·부채 이전 시 법원 등의 승인·동의 불요, 법원의 금지명령 배제
영국·EU	▶ (요건) 부실(우려) 결정 ▶ (방식) 보험금 지급 및 청·파산	▶ (요건) 부실(우려)결정 + <u>신속정리 요건* 충족</u> * 정상화 가능성, 공익 등 ▶ (방식) 민간매각, 가교 이전, 베일인, 일시적 국유화 등 ▶ (절차 면제) 입찰절차 생략, 잠정평가 허용, 지분이전 효력이 他법 등에 우선, 이의제기시 효력 유지 ▶ (사후적 손실보전) 파산절차에 따른 지급액 보장(NCWOL)

1. 미국의 신속정리제도 (시스템리스크 결정, SRE)

※ SRE(Systemic Risk Exception) : 시스템 리스크 결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 예외 적용

□ (배경) 미국은 '08년 금융위기 시 기존 금융회사 정리제도가 은행에만 적용*되는 한계로, 납세자 부담**이 크게 발생했다고 진단

* '33년 대공황 이후 은행에 대한 정리제도 도입, '91년 적기시정조치, 최소비용 원칙, 시스템 리스크 예외, 절차 면제(동의 없이 자산·부채 이전) 명문화 등이 마련

**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 금융회사를 파산 및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상화 등으로 정리

○ 이에, '10년 Dodd-Frank법으로 은행 外 금융회사의 시스템 리스크 우려 시에도 신속정리가 가능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

□ (요건 및 절차) 최소비용원칙에 따른 부실금융기관(감독당국 결정)의 파산이 금융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 FRB 및 FDIC 이사회(2/3이상 찬성)의 서면권고시 재무부장관이 대통령과 협의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을 결정

- **(신속성 보장)** FDIC가 입찰절차 및 실사 생략, 이해관계자 승인·동의 없이 자산·부채 이전* 가능하여 정리의 신속성 보장

*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이전 시 법원·채권자·주주 등의 승인·지시·동의 不要

- 또한, FDIC의 정리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 등을 배제하여 사법적 구제로 인한 정리 지연을 방지

- **(사후 손실보전)** 예금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손실보전 규정 없음

* 청파산시 일반채권자 및 주주에게 배당되는 재산이 극히 미미 → NCWOL의 실익이 적음

2. 영국 특별정리제도 (SRR) · EU 금융회사 정리지침 (BRRD)

※ SRR(Special Resolution Regime), BRRD(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 **(배경)** Northern Rock 사태*를 계기로 영국 하원 재정위원회가 現 제도의 한계**를 지적, 특별정리제도(SRR) 도입('09.2월, 은행법)

* 글로벌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 BOE의 유동성 공급 발표 이후
뱅크런 발생(이틀간 예금 8.3%↓) → 지속 매각 추진하였으나 불가하여 국유화 결정

** 그간 영국·EU는 금융회사에 대한 별도 정리제도 없이 파산법에 근거한 청파산만을 허용

- EU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회원국 재정 악화 및 부실 전이 · 확산을 겪고, 영국의 SRR을 반영하여 정리지침 제정('14년 BRRD)

⇒ 공익 등 요건 충족 시 신속정리, 미충족 시 청·파산으로 이원화

- **(요건 및 절차)** 부실(우려)금융회사(감독·정리당국 협의로 결정)의 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공익상 필요하며, 신속정리 목적에 부합

- 영국은 정리·감독당국·재무부 협의로, EU는 정리당국이 결정

- **(신속성 보장)** 시스템 리스크 우려시 입찰절차 생략¹⁾, 잠정 실사²⁾, 정리당국이 별도 동의 없이 지분이전 가능³⁾하도록 하여 신속성 보장

* 1)투명한 매각절차, 잠재인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이해상충 無 매각 가격 극대화 등 의무 면제

2)이후 독립적인 가치평가 수행자를 임명하여 정식 가치평가를 수행

3)지분이전의 효력이 他 계약, 법률 또는 기타 어떠한 제한에도 관계없이 우선되도록 규정

- 또한, 소송 등 이의제기로 인해 정리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취소 또는 원상회복이 제한되도록 하여 정리 지연 방지

- **(사후 손실보전)** NCWOL* 조항에 따라 통상적인 파산 절차에 따른 지급액 만큼은 보장(사후평가를 거쳐 부족분을 정리기금으로 지급)

* NCWOL: **N**o **C**reditors **W**orse **O**ff than in **L**iquidation

- ◆ 해외 주요국은 '23년 은행 부실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우려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단기간 내 금융시장을 안정화
 - (美SVB) 시스템리스크 결정을 통해 뱅크런 발생 4일만에 가교이전
 - (英SVB) 빠른 신속정리 결정을 통해 뱅크런 발생 3일만에 매각
 - (CS) 헌법상 긴급명령 발동으로 유동성 위기 4일만에 신속한 합병을 지원

1.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 가교 계약이전

- **(상황)** '22년 이후 금리 급등으로 미실현 평가손실이 누적*된 가운데, 손실 확정 공시 및 자본확충 계획 발표 하루만에 뱅크런** 발생('23.3.9.)

* 장기국채·모기지채권(MBS)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

** 美SVB의 채권매각 손실 공시 이후 하루만에 총 예금의 30%(420억달러) 인출

- 캘리포니아주 감독당국은 SVB 뱅크런(3.9.) 직후 유동성 부족과 지급 불능을 사유로 SVB 폐쇄조치 및 FDIC 청산인 지정(3.10.)

- **(신속정리 결정)** FDIC·FRB·재무부는 SVB 폐쇄 이후 주말(3.11.~12.) 동안 OCC(통화감독국), 은행 관계자와 협력해 비공개 감독 정보, 실시간 은행 보고자료, 시장지표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

- 이후 자산·부채 구조가 유사한 지역은행으로의 전이 우려* 등 6가지 사유**를 근거로 시스템리스크 예외(SRE) 조치 결정(3.12.)

* Signature Bank 100억 달러(총자산 1/10 수준), First Republic Bank 250억 달러(총자산 1/9 수준) 등 대규모 예금 인출

** ①예금 인출 가속화, ②은행 유동성 악화, ③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④기업 운영 중단, ⑤시장신뢰도 하락, ⑥광범위한 부정적 효과

- 이에 따라, 재무부장관은 가교은행에 예금전액 이전을 통한 보호 조치를 발표(3.12.), FDIC는 계약이전(가교P&A) 실시(3.13.)

- **(효과)** 은행채 스프레드, CDS 프리미엄*, 채권시장 변동성 지표**, 예금 인출률 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완만하게 안정

* CDS 프리미엄: 美유럽 시중은행 08'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 점차 하향 안정세

** 채권시장 변동성 지표: 3.15일 198pt(고점) → 3.27일(매각일) 161.7pt 이후 하향 안정세

2. 영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 민간매각(제3자 계약이전)

□ **(상황)** 미국 SVB 영업정지 당일, 영국 SVB에도 **뱅크런*** 발생(3.10.)

* 美 SVB 영업정지 당일(3.10.), 하루만에 SVB UK 전체 예금 중 33% 인출

- 자산구조는 양호하였으나(자산 £88억, 예금 £67억), **유동성 훼손**이 심각하여 **부실 또는 부실 우려**(잠재적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

□ **(신속정리 결정)** BOE는 금융시스템 안정*, 매수자 등장 등을 고려하여 **SRR 적용 및 HSBC**에 매각**(제3자 인수) 결정(3.12.)

* 당초 청산으로 발표하였으나, 영국의 20여개 주요 테크 기업이 재무부장관 및 총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민간매각으로 정리방식을 변경

** HSBC는 3.12.(일) 5시간동안 SVB UK의 데이터룸에 접속하여 70% 실사 후 인수를 결정

□ **(효과)** 정리비용 “0” 달성 및 **핵심기능**(기술기업 금융서비스)의 중단없는 정리로 FSB가 신속정리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

3. 스위스 크레딧스위스 (CS) : 긴급명령 · 합병

□ **(상황)** 다년간 누적되어 온 자산건전성·신뢰도 훼손이 ‘23.3월 내부통제 결함 공시(3.14.) 및 최대주주의 추가지원 거부(3.15.)를 계기로 급격한 유동성 위기(전분기말 대비 예금 약 18.0%↓)로 비화

- 내부통제 결함 공시 다음날(3.15.), 주가가 전일 대비 **24.2% 하락**, CDS 프리미엄이 78% 상승하는 등 시장 급변 양상을 보임

□ **(긴급명령 발동)** 연방 평의회(행정부)*는 긴급명령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3.16.), UBS와 신속한 합병(M&A) 승인 및 절차 면제**(3.19.)

*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7명의 연방각료로 구성되며 7개 연방부처를 관장

** (합병승인) CS 순자산이 (+) 이나 유동성 위험이 매우 심각하여 M&A 승인 (절차면제) UBS의 CS인수 시 합병법상 의무 절차(주주동의, 재무제표 작성 등) 면제

□ **(효과)** 시장지표(CDS, STOXX 600 Banks)는 안정세를 회복